

기획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직무범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학교의 교육, 경영, 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참사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부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비서실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0.11.16, 2015. 5. 1, 2019. 2. 26, 2019. 8. 1., 2021. 3. 1.)

③ 위원장은 학사부총장, 간사는 비서실장으로 한다. (개정 2019. 2. 26)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케 할 수 있다.(개정 2019. 2. 26)

제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중요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(개정 2010.11.16)
2. 기구와 조직에 관한 개선방안
3. 학제와 학사행정에 관한 개선방안
4. 인력 및 물자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
5.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6. 대외홍보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방안
7. 건설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8. <삭제 2010.11.16>
9. 건설 및 공간위원회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 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주 1회로 한다. (개정 2010.11.16)

② 임시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 (소위원회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 (의결) 심의 및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.

제8조 (수당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8. 1.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'사무처'와 '재무처'를 '총무처'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